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 . . . (제 회)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제출연월일	20 . . .

법제처 심사 전

1. 개정이유

고령친화제품의 선택권을 넓히기 위하여 고령친화제품등의 정의에 건강기능식품 및 급식 서비스로 제한된 식품군을 노인을 위한 식품(건강기능식품법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을 포함한다) 및 급식 서비스로 확대·변경하고자 함.

또한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을 위한 심의를 전문적·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소비자단체 및 노인단체 등 고령친화제품 사용자를 대표할 수 있는 단체가 추천한 자를 심사위원회에 추가로 반영하기 위함.

아울러 고령친화우수사업자에 대한 제21회 기술규제위원회('19.10.10)의 적합성평가 검토 결과 고령친화우수사업자 지정제도가 폐지로 결정됨에 따라 고령친화우수사업자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고령친화제품등”의 정의(안 제2조 개정)

-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제도 운영을 위해 고령친화제품 중 식품의 범위를 노인을 위한 식품(건강기능식품법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을 포함한다) 및 급식서비스로 확대함.

나. 우수제품 등의 심사위원회(안 제10조 개정)

-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을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에 소비자단체 및 노인단체 등 고령친화제품 사용자를 대표할 수 있는 단체가 추천한 자를 추가함.

다. 우수사업자 지정의 기준 및 절차(안 제8조 삭제)

- '09년에 도입되었으나, 실적이 전무하고 인증기관 및 세부인증절차가 부재한 고령친화우수사업자 조항 삭제.

대통령령 제 호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또는 신설한다.

제2조제3호 중 “노인을 위한 건강기능식품 및 급식 서비스”를 “노인을 위한 식품(「건강기능식품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을 포함한다) 및 급식 서비스”로 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9조 본문 중 “우수제품 등의”를 “우수제품의”로 하고, 같은조 제1항 본문 중 “우수제품 또는 우수사업자의”를 “우수제품의”로 하며, “해당 제품 또는 사업자가”를 “해당 제품이”로 하고, “우수제품 또는 우수사업자로”를 “우수제품으로” 한다. 같은조 제2항 본문 중 “우수제품 또는 우수사업자를”을 “우수제품을”로 한다.

제10조 본문 중 “우수제품 등의”를 “우수제품의”로 하고, 같은조 제1항 본문 중 “우수제품 또는 우수사업자의”를 “우수제품의”로 하고, 같은조 3항 3호에 “소비자단체 및 노인단체 등 고령친화제품 사용자를 대표할 수 있는 단체가 추천한 자”를 신설한다.

제11조 본문 중 “우수제품 및 우수사업자의”를 “우수제품의”로 하고, “우수제품이나 우수사업자로”를 “우수제품으로”로 하며, “우수제품·우수사업자”를 “우수제품”으로 하고, “할 수 있고”를 , “우수사업자는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제12조 본문 중 “우수제품 또는 우수사업자의”를 “우수제품의”로 한다.

제13조 본문 중 “우수제품 등의”를 “우수제품의”로 하고, 같은조 제2항
본문 중 “구매 또는 우수사업자의 서비스 이용을”를 “구매를”로 한다.

제14조의2제2호는 삭제한다.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생략)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3. 노인을 위한 <u>건강기능식품</u> <u>및 급식 서비스</u>	3. 노인을 위한 <u>식품</u> (「건강기능식품법」 제3조제1호에 따른 <u>건강기능식품</u> 을 포함한다) 및 <u>급식 서비스</u>
제8조(우수사업자 지정의 기준 및 절차) ①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고령친화우수사업자(이하 "우수사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u><삭 제></u>
1. 서비스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전문인력	<u><삭 제></u>
2.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필요한 설비 또는 장비	<u><삭 제></u>
3. 서비스 관리운영 방안	<u><삭 제></u>
4.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에 필요한 안전 및 권익보호 장치	<u><삭 제></u>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우수사업자의 지정기준을 세부적으로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u><삭 제></u>
③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으려는	<u><삭 제></u>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우수제품 등의 지정절차) ① 제7조와 제8조에 따라 우수제품 또는 우수사업자의 지정신청을 받은 지정권자는 해당 제품 또는 사업자가 제7조제1항이나 제8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면 제10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우수제품 또는 우수사업자로 지정하고, 별지 제5호서식이나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라 우수제품 또는 우수사업자를 지정하면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우수제품 등의 심사위원회) ①지정권자는 우수제품 또는 우수사업자의 지정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제9조(우수제품의 지정절차) ①제7조에 따라 우수제품의 지정신청을 받은 지정권자는 해당 제품이 제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면 제10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우수제품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5호서식이나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 우수제품을 ----- 제10조(우수제품의 심사위원회) ①----- 우수제품의 -----	야 한다. ② ~ ③ (생략) 1. (생략) <신설> 2. (생략) 제11조(우수제품 및 우수사업자의 표시) 제9조에 따라 우수제품이나 우수사업자로 지정을 받은 자는 별표 1에 따른 우수제품·우수사업자 표시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수제품은 해당 제품, 그 포장 및 홍보물 등에 표시를 할 수 있고, 우수사업자는 해당 사업시설, 그 상호 및 홍보물 등에 표시를 할 수 있다. 제12조(지원센터의 지정업무 수행 공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우수제품 또는 우수사업자의 지정업무를 지원센터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3조(우수제품 등에 대한 지원) ① (생략)	--- ② ~ ③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1의2. 소비자단체 및 노인단체 등 고령친화제품 사용자를 대표할 수 있는 단체가 추천한 자 2. (현행과 같음) 제11조(우수제품의 표시) 제9조에 따라 우수제품으로 지정을 받은 자는 별표 1에 따른 우수제품 표시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수제품은 해당 제품, 그 포장 및 홍보물 등에 표시를 할 수 있다. 제12조(지원센터의 지정업무 수행 공고) ----- 우수제품 지정업무를 지원센터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3조(우수제품에 대한 지원) ① (현행과 같음)
--	--	---	---

1. ~ 3. (생 략)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우수 제품 등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우수제품의 <u>구매</u> 또는 우수사업자의 서비스 이용을 권유할 수 있다. 1. ~ 2. (생 략) 제14조(우수사업자 등에 대한 지원 환수 절차)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원 상당액의 환수절차는 국고금관리에 관한 법령 및 지방재정법령에서 정하는 절차를 준용한다 제14조의2(규제의 재검토) (생 략) 1. (생 략) 2. 제8조에 따른 우수사업자 지정의 기준 및 절차: 2014년 1월 1일 3. 삭제 제15조(과태료 부과·징수의 절차)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 ----- ----- 구매를 ----- ----- 1. ~ 2. (현행과 같음) <삭 제> 제14조의2(규제의 재검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삭 제> 3. (현행과 같음) 제15조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연 락 처	044-202-3460, 3461